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75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19.
3. 회 부 일 : 2024.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아동복지법」(이하 “아동복지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직무 범위를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로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 ----- -----.

현행	개정안
1. ~ 53. (생략) <u><신설></u>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50. (생략) <u><신설></u>	1. ~ 53. (현행과 같음) 54.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u>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 ----- ----- ----- ----- ---. 1. ~ 50. (현행과 같음) 51. <u>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u>

2. 검토의견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요

□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¹⁾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함.

○ 이는 2020. 4. 7. 법 개정²⁾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이전에는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도입하여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이었음.

1)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한편, 아동학대처벌법²⁾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동행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신고된 현장 등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 조사 등을

2)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 ⑦ (생략)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 ⑧ (생략)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건 초기단계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응급조치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상담,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개정안에 따른 대상 범죄 개관

- 개정안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3호³⁾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⁴⁾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하는바, 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3)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각 목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이러한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하여 개인과 사회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과 엄정한 수사를 통한 근절이 시급하게 요구됨.
-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21년 37,605건을 기록한 이후 2022년 27,971건, 2023년 25,73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피해아동수를 나타내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22년 3.85건, 2023년 3.64건으로 여전히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건수·사례건수·피해아동 발견율 등>

(단위: 명, 건)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동학대 신고건수	41,389	42,251	53,932	46,103	48,522
아동학대 사례건수	30,045	30,905	37,605	27,971	25,739
피해아동 발견율*	3.81	4.02	5.02	3.85	3.64
추계아동인구 (만0세~만17세)	7,888,218	7,678,893	7,487,738	7,256,021	7,069,296

* 자료: 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44, p.48

* 발견율: (아동학대 사례건수/추계아동인구)*1000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

□ 개정안은 현장조사·상담·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수사권까지 부여하여 조사와 수사의 일원화를 통해 피해아동의 불필요한 중복진술 및 수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주체와 범죄 수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르는 경우 피해 아동이 각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 아동은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5)에 따른 사회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⁶⁾로서 아동학대 사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아동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살피는 등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아동학대 현장에 함께 출동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 중심으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 수사 중심으로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효율적인 수사 및 피해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신고접수·현장조사·피해아동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혐의 발견 및 신병확보·증거확보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첫째,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 「형법」상 범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 형사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범죄수사가 아닌 아동 보호에 우선순위가 있고, 아동학대 사례 조사·판단은 범죄 여부의 판단이 아닌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경찰과의 업무 분담,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협업을 통해 현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⁷⁾하므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7)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적 관점의 아동학대 조사·판단과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적 관점의 아동학대범죄 수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체계를 고려할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9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 ⁸⁾)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 8)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